

2021-2학기 미등록 휴학 신청 안내

1. 미등록 휴학 기간 : 2021. 8. 23.(월) ~ 27.(금)

※ 휴학원서 교무처 방문 제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경우(미등록 휴학)

정해진 미등록 휴학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개강 후에는 등록금 미납으로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

- 1)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에는 교무처 최종 휴학원서 접수 일자에 따라 추후 자퇴할 경우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4번 마항 참조)
- 2) 중간시험 이전 휴학 시 등록금 반환은 되지 않으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됩니다. 중간시험 이후 휴학하는 경우는 복학 시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학기의 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질병, 회사근무지 이동, 천재지변으로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질병일 경우 종합(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신·출산인 경우는 병의원의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2. 대상 : 재학생 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대상자

(1학년 1학기 일반휴학은 불가하며, 휴학 기간은 1년입니다.)

3. 절차

가. **대학 사이버캠퍼스(<https://cyber.sewc.ac.kr:8081/>)** 접속하여 휴학원서 작성, 출력

나. 학생처에서 장학금 및 대출 확인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원서에 담당자 확인이 있어야 함.)

다. 학술정보센터에서 도서대출 확인

라. 해당 학과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휴학 원서에 지도교수/학과장 서명)

마. 교무처에 휴학원서 제출

4. 기타

가. 대출 도서가 반납되지 않았거나 연체료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이 불가하니, 학술정보센터에서 먼저 도서반납 또는 연체료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병휴학의 경우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휴학하는 경우 교내 장학금은 소멸됩니다.(등록금 반환기준과 동일하게 반환)

라. 해당 학기 휴학 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 학과에 방문하여 휴학 취소원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가 자퇴할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57조(등록금)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사항 : 02-3708-9000 (000은 해당 부서 구내번호)

가. 장학금 / 학자금 / 대출 : 학생처(구내번호 043, 041)

나. 휴·복학 / 자퇴 / 재입학 / 수강신청 / 성적평가 / 교원자격증 / 학점관련
: 해당 학과 사무실 또는 교무처 학적(구내번호 036, 031)

다. 등록금납부 / 교육비납입증명서 : 총무처 경리과(구내번호 057)

라. 학사 / 일반 관련 : 해당 학과 사무실

교 무 처 장